



생방송 인터뷰 보도의 객관성 판단 기준은?

-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5누47364 판결을 중심으로

노만경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신문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종합편성(綜合編成)채널’이 등장하면서 우리 방송업계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흔히 ‘종합편(綜編)’이라고 불리는데, 뉴스 보도를 비롯해 드라마·교양·오락·스포츠 등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¹⁾ 모든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지상파’와 차이점이 없으나 케이블 TV나 위성TV를 통해서만 송출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만 시청할 수 있다. 또 하루 19시간으로 방송 시간을 제한받는 지상파와 달리 24시간 종일 방송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미디어 관련법에 의하면 신문사와 대기업은 종합편의 지분을 30%까지, IPTV의 지분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케이블TV나 위성TV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에 맞먹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과 신문재벌이라는 거대 자본의 언론시장 장악과 언론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²⁾

1) 방송법 제2조 제18호는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터넷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20221&cid=40942&-categoryId=31759>(검색일: 2016. 2. 29.)



다양한 방송채널의 등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분명 순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본의 논리상 과열경쟁으로 인한 왜곡·과장 보도의 문제가 대두되고, SNS를 통한 신상 털기 등의 현상과 결합하면서 명예훼손이나 여론조작의 우려도 낳고 있다.

우리 방송법은 종편 등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보도를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종편의 뉴스와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당 판결을 통해 방송보도에 관한 규제 법리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방송규제의 근거 및 적용사례

헌법 제21조³⁾는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과 같은 언론·출판이 가지는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나 검열은 허용될 수 없겠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 정도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3)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하고,⁴⁾ 방송통신위원회⁵⁾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방송업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또는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⁶⁾ 위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⁷⁾

1963. 12. 16. 법률 제1535호로 제정된 방송법에는 위 제재조치에 관한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73. 2. 16. 법률 제2535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방송윤리위원회는 보도 논평의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 방송윤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정정·해명 또는 취소 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출연정지, 집필정지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언론윤리위원회법 및 방송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3347호로 제정된 것) 제39조 제1항 및 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그 후 1990. 8. 1. 법률 제4263호로 개정된 방송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방송위원회⁸⁾는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시정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에서 본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⁹⁾

주지하듯이 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매체가

4) 방송법 제33조 제1항.

5) 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그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종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하던 정보통신에 대한 규제 역할과 정보통신부가 보유했던 방송 및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각종의 인허가 및 승인권을 갖게 되었다.

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7) 방송법 제100조 제2항.

8)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이다.

9)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고, 국민들이 여론 형성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방송의 매체적 특성상 기술적, 경제적 진입 장벽이 높아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보유하고 정보의 유통을 제어하는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방송매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음성과 영상을 동



시에 직접적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최근에는 방송 채널의 증가로 방송매체에 대한 사회적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방송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방송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결집될 가능성이거나 여론에 대한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오용될 위험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방송이 한 번이라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면 여론의 왜곡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를 정정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입법자에게는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에서 가능한 한 균형 있고 완전하게 표현될 것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앞서 본 제재조항은 이러한 균형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책무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¹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규정에 따라 방송업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는 적지 않다. 한 지상파 방송사는 뉴스보도에서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사립대 설립자의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유력 정치인인 모 의원의 사

10)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이후 위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위 제재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¹¹⁾ 살펴볼 판결도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자 방송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판결 요지 및 쟁점

원고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2014. 4. 18. 뉴스 프로그램에서 2014. 4. 16. 오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의 실종자 구조 작업과 관련해 프로그램 진행자가 해난구조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후 위 인터뷰 내용의 일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4. 8. 7. 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분(이하 ‘문제된 인터뷰 내용’)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함으로써 심의규정 제14조¹²⁾ 및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2.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 제24조의2 제2항¹³⁾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의결을 한 다음,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처분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제재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¹⁴⁾ 항소심인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1)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183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4누4599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3974 판결.

12)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②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고지방송 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편의상 생략한다.

대상 판결은 사건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한 뉴스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기초가 되는 객관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방송법 제 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같은 매체 또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므로 방송의 공정성은 매체별·채널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이고, 특히 이 사건 인터뷰는 재난 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영된 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 해당하므로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방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일반적인 다른 뉴스 프로그램보다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중편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재난보도에 관한 이 사건 뉴스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객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진행자가 문제된 인터뷰 내용의 서두에서 밝힌 구조수단으로서 다이빙벨의 유용성에 관한 정보가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여러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인터뷰는 “다이빙벨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타당한 것인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 부분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보도의 객관성’이 요망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위배하였다고 하였는데 매우 의미 있는 판시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 인터뷰는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 진행자가 부연 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무조건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문제된 인터뷰 내용은 단지 전문가가 일방적인 견해를 주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설·논평 프로그램’에 해당함에도 ‘보도의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본 이유에 대해 대상판결은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 전문가나 관계자의 발언을 청취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진위를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도 인터뷰 대상자의 지위나 경력,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청자가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인터뷰를 시청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인터뷰 대상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인터뷰 대상자의 위주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바 없고, 결국 이 사건 인터뷰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문제된 인터뷰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래 보도의 ‘객관성’은 사실보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사실의 보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립된 판례이다.¹⁵⁾ 즉, 판례는 ‘언론매체의 기사가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경우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자가 인터뷰를 통해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이빙벨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

15)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1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였고, 그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법원이 기존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한 사실보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보도지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방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로서 작용하고 여론의 형성에 중요하므로 가능한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편채널의 등장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순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자본의 논리로 인해 왜곡·과장 보도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인터뷰를 활용한 방송보도에 있어서의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지켜야 할 객관성 확보의 방법에 관해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남겼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두고 있지만 방송의 객관성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겠다. 

